지방재정분야 주요 질의 · 회신

정광량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본 질의회신 사례는 2011년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회신사항을 정리한 것임

1. ○○○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 관련

재정정책과-4871(2011.09.26)

Q 질의내용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재원조성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의회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이하 "도촉법 조례"라 함)」를 개정하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로 규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편성)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도촉법 조례"의 근거 법률인 "도촉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 징수되는 재산세의 30퍼센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바,

– 귀 도의 "도촉법 조례" 개정안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로 규정하는 것은 ○○○의 일반 세원인 보통세의 일정부분을 목적세화 하는 측면이 있어 보통세의 부과 · 징수목적과 지방세 관련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특별회계" 재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도촉법"을 위배할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산총칙 수정 및 추경심사 관련

재정정책과–4910(2011.09.28)

Q 질의내용 1

● 의회에서 예산심사시 「예산총칙」을 수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총칙 수정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바, 예산심사시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Q 질의내용 2

●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총액인건비의 빈번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차원에서 「예산총칙」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을 삭제할 수 있는지?

Q 질의내용 3

● 인건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8조제2항의 1에 해당하여 그 수정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서울시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가 동법 제108

조제2항의 1의 의무적 경비에 해당하는지?

- 만약, 의무적 경비일 경우 예산총칙 중 관련부분의 삭제 및 수정이 불가능 한지?

Q 질의내용 4

● 예산총칙을 수정할 경우 수정사항이 시장의 동의대상인지? 아니면 수정사항이 일반적인 예산감액조정에 해당하여 시장의 동의대상이 아닌지 여부?

Q 질의내용 5

● 예산총칙의 "일시차입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동 수정사항이 시장의 동의대상인지? 아니면 수정사항이 일반적인 예산감액조정에 해당하여 시장의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Q 질의내용 6

● 지방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하지 않은 당초 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예산의 내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산의 일부분**이므로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예산총칙을 수정하는 경우에도「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 할 수는 없습니다**.

A 회신내용 2

○ 예산의 이용은「지방재정법」제47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예산총칙」상 예산의 이용 관련 내용도 예산안 심의시 삭제하여 의결** 할 수 있습니다.

A 회신내용 3

○ 「지방자치법」 제10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방의회가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예산총칙' 상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포함한 예산의 "이용" 관련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 된 사항으로서, 동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 하여도 상기 **「지방자치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예산집행상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는 대부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근로기준법」, 「연금부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급 또는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경비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의 ·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회신내용 4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총칙은 〈질의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 따라서, 예산총칙 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A 회신내용 5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계별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방의회가 감액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 ·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 회신내용 6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127조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의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범위내에서 심의 ·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의회가 심의 ·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중인 예산을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정책의 수행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중히 검토 ·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설 개 · 보수 관련

재정정책과-4946(2011.09.30)

Q 질의내용

●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 관련 시설 개 · 보수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인접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과 인천광역시 소재학교 및 민간시설 개 ·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인천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 이라함)」 제2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 ·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제1항에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 ·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인천광역시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회 관련시설과, 대회 관련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 민간시설 등이 「대회지원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회관련 시설' 인 경우, 인천광역시는 동시설의 개 ·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해석에 관한 질의

재정정책과–4786(2011.09.21)

Q 질의내용

●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상의 '금고의 수' 조항과 같은 의미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금고의 수' 조항은 특별회계 및 기금은 1금고 지정이 가능하며,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도 지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은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석이 나뉘어 질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한다면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군금고 지정방법

재정정책과-4845(2011.09.23)

Q 질의내용

● 군 관내 금융기관이 1개인 상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관외지역의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자치단체 세입금 수납, 지출, 자금관리 · 운영 등의 업무를 취급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내에 금고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두어야 하며,

– 「횡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 제5조에서도 군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및 「횡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군 관내 지역에 타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2개 이상이 될 경우 경쟁방법으로 금고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6. 경상남도 금고 관련

재정정책과-4846(2011.09.23)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44호) 및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재지정 할 경우

- 제1금고 및 제2금고의 금융기관은 변경하지 않고 기금회계 일부를 제1금고로 변경하여 재지정 가능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서 정하는 금고지정 방법은 금고지정 과정에서 적용하는 규정이고, 귀 도에서 문의하신 사항은 금고를 지정한 후 자치단체와 지정된 금고간 약정(계약)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 귀도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기금회계 일부를 다른 금고로 재지정할 경우 ① 회계간 변경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② 귀도와 해당 금고간 합의가 되어 동사안이 약정서에 명기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정책과-1067(2010. 3. 3)

Q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 가능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 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특별회계의 성격 및 설치 목적상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당해 특별회계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주차장법」 제22조 및 제32조 제7항은 주차요금과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 ·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8.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출 및 예탁 가능여부

인터넷질의답변, 2006. 5.19

Q 질의내용

- 작년부터 악화된 구의 재정여건상 인건비의 예산편성이 어려워 올해 당초예산에 직원 인건비를 85%만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하려고 하니 인건비를 100% 편성할 재원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차입코자 함
-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중 계획이 취소된 사업비에 대하여 금회 추경시 시설비를 감하고 예탁비로의 편성이 가능한 지 여부와 만일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예탁금과 예수금이 아닌 전출금과 전입금으로 편성이 가능한 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전출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출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 자치단체에서 전출금 또는 예탁금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면 됨

9. 특별회계 폐지시 청산 절차

인터넷질의답변, 2008. 5. 1

Q 질의내용

- 특별회계 청산의 절차는?

A 회신내용

○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을 경우 조례의 폐지와 함께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것

이며,

○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전출을 할 수 있으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10.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계속비예산 처리방법

인터넷질의답변, 2010. 1. 4

Q 질의내용

- 특별회계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긴급히 문의드립니다.
-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5월중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 폐지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예산부서 자체 검토를 하였으나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질 않아 글을 남깁니다.
- 우리 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의 일부는 2009년에서 2010년으로 30억원을 계속비이월할 예정입니다.
- 2010년 당해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전출금 처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1월중 확정될 계속비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A 회신내용

○ 계속비사업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예산도 유지될 수 없을 것이며, 당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 변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인터넷질의답변, 2006. 5. 1

Q 질의내용

● 지방재정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회계간거래(전출, 전입금)가 있을 경우 나중에 변제해야 하는지, 예를들면,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예산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다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변제해야 하는 사항인지

A 회신내용

○ 특별회계는「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다면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며 전입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음

12. 특별회계의 예산 재배정

재정정책팀, 2006. 7.24

Q 질의내용

● ○○사업단에서 ○○특별회계설치조례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라는 규정에 의거 ○○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를 준용하여 특별회계의 예산을 출장소, 읍 · 면 · 동에 재배정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

○「지방재정법」제85조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